

2

연구비 집행절차

- 소관 : 산학협력단
- 주무 : 연구지원팀



[주요 부적정 집행유형]

구분	비목(세목)	부적정 집행
초과증액 및 신설	연구시설·장비비	• 건당 3천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
	연구수당	• 연구계획서보다 증액집행 • 연구계획서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설하여 집행
	위탁연구 개발비	• 당초계상이 안된 비목을 신설하여 집행 • 20%이상 미승인 초과집행(사전승인의 경우에도,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%를 초과할 수 없음)
	간접비	• (증액이 불가능한 비목)증액 집행한 경우
비참여 연구원 집행	직접비 연구수당	• 참여연구원이 아니거나, 당초계획 및 변경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여비,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급
참여연구원 연구활동비 지급	연구활동비 (전문가활용비, 회의수당)	•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, 회의수당
목적 외 집행	전 비목	• 연구와 관련 없는 출장, 개인경비 집행
개인성경비	연구활동비	• 사적 용도의 학회등록비, 선물비, 평일 점심 식대
기간 외 집행	전 비목	• 지원기관 승인 없이 연구기간 외 집행 (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인쇄비, 정산수수료, 연구수당, 공공요금 등은 제외)
종료시점 집행	연구시설·장비비	• 최종(단계)종료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·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용
증빙 불비 및 불인정	직접비	•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나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(집행원칙 :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) • 객관적, 통상적 영수증이 없는 경우 (간이영수증 3만원 초과 → 현금영수증 발행)
	연구시설·장비비	•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비를 구매 또는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
	연구수당	• 기여도평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지급한 경우 •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%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•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단독 지급(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)